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5040812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13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5040812 판결

전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현, 박윤아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정우진

변론 종결 2024. 3. 14.

판결 선고 2024. 4.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22. 9.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E(그 상호가 2023. 3. 31.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53만 주(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4,450원, 총 2,358,500,000원(= 53만 주 × 4,45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2022년 9월 27.일에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상장법인인 E의 기명식 보통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는 2022년 9월 27.일에 "E"의 주식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E"의 기명식보통주의 구주를 매도하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대상 주식]: 대상 주식 관련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회사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G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상회사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H, 8층		
대상주식	보통주식 53만주		

제3조 [매매금액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제2조의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금액은 주당 4,450원으로 일금

이십삼억오천팔백오십만원(₩2,358,500,000)으로 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본 계약" 당일에 "E"의 주식 양수도 계약금 사액 원을 지급하고 2022년 10월 7.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이 지급되면 피고는 "E"의 매매대상주식을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증권계좌에 이체하며, 본 주식양수도 계약을 종료한다.

(3)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 계약금은 몰취하기로 하며 피고가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도차익의 전부를 이 사건 조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본 매매계약 외에 I, J의 주식 80만 주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22년 10월 28.일까지 매도하지 않도록 보증하기로 하며,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한다. 만약 매도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하기로 한다.

다. 위 I, J은 이 사건 1차 계약 이후인 2022. 10. 4. 및 같은 달 5. 그들이 보유한 E 주식 약 450,000주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대한 2,836,844,384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K가 L 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E의 보통주식 1,078,516주에 관하여 2022. 9. 14. 예탁유가증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790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E은 2022. 10. 4. 그 사실에 관하여 공시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22.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양수도 승계 계약서

본 계약은 2022년 9월 27.일에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상장법인인 E의 기명식 보통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변경된 조건으로 승계하는 계약이다.

제1조 [매매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는 2022년 9월 27.일에 "E"의 주식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E"의 기명식보통주의 구주를 매도하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대상 주식]: 대상 주식 관련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회사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	G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H, 8층		
대상주식	보통주식 53만주		

제3조 [매매금액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제2조의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금액은 주당 4,600원으로 일금 이십사억삼천팔백만원(₩2,438,000,000)으로 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기 계약금을 사억 원(₩400,000,000)은 승계하고 2022년 10월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이 지급되면 피고 "E"의 매매대상주식을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증권계좌에 이체하며, 본 주식양수도 계약을 종료한다.

(3)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 계약금은 몰취하기로 한다.

(4) 기존 계약을 변경된 조건으로 승계함에 따라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바. 한편 E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이 2022. 10. 12. 및 같은 달 14. 두 차례 행사되어 위 회사의 주식 2,371,710주 및 215,610주가 추가로 발행되었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22. 10. 27. 피고를 상대로 '위 다.항, 라.항 및 바항 각 기재 사실에 비추어 E의 최대주주사, 2대 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1, 2차 계약의 해제를 위해 주가급락 사유를 만들었다는 강한 의심을 품기에 이른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2022. 11. 10.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2022. 10. 28.까지 주식양수대금의 잔금 2,038,000,000원(= 주식양수대금 2,438,000,000원 -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 채무를 불이행한바, 본 서면을 통해 이 사건 2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 4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매매대상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2022. 10. 28.로 연장해줄 테니 이 사건 1차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2차 계약은 잔금 지급기일만 변경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이 사건 조합이 위임한 바와 달리 이 사건 2차 계약서 제3조 제4항에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보증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삭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삭제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1, 2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1, 2차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 사건 조합 내지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I, J이 그들이 보유한 E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 한편 E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어 E 주식이 대규모로 발행되었다.

② E의 최대주주인 K는 2022. 9. 6. E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K가 보유한 E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에 따른 E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위 ①항 기재 사정들로 인하여 E의 주식 시가가 크게 하락한바, 결국 M과 K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M은 K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20억 원을 전액 반환받았다. 이에 비추어, K가 E의 주가 하락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M의 주식 인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조합에게 E의 주식을 양도한바, 피고 역시 위 주가 하락에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1차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2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금 4억 원은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점, 피고 측의 계약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금 4억 원을 위약금으로 전부 몰취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2차 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또한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금 4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 계약이 잔금 지급기일만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기재한 부분이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리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2차 계약은 위 I, J의 주식 매도 이후 체결되었고, 이 사건 2차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1주당 양수대금이 증액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잔금 미지급 시의 계약금 몰취 규정은 유지된 데 반하여, 피고의 계약 파기 시의 배상 규정은 삭제되었다. 또한 이 사건 2차 계약서 제3조 제4항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변경된 조건으로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1차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2차 계약은 이 사건 1차 계약과 주요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그 문언의 취지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특약사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E 주식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나 E 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 행사가 없음을 보장하였다거나, E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2차 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22.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정한 잔금 2,0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2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위 계약금 4억 원을 몰취하였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4억 원은 전체 주식양수대금 2,438,000,000원의 약 16%인바, 손해배상 예정의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예정액이 양수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 내지 이 사건 조합은 I, J이 E 주식을 매도한 사실 및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였다.

③ 이 사건 2차 계약에 의하면 E 주식 1주당 양수대금은 4,600원이다. 그런데 위 주식 1주의 총가는

이 사건 가압류가 공시된 다음날이자 I, J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였을 무렵인 2022. 10. 5.에는 4,740원, 이 사건 2차 계약이 체결된 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진 2022. 10. 12.에는 4,905원, 그 다음날인 2022. 10. 13.에는 4,190원이다. 위 종가는 그 후 2022. 10. 17.까지 4천 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22. 10. 21.부터 2천 원대로 하락하였고, 2022. 11. 18.부터 2023. 2. 23.까지는 1천 원대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2023. 1. 내지 2.경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103만 주 전부를 1주당 약 1,890원에 처분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훨씬 상회하는 약 1,436,300,000원[= (이 사건 2차 계약상 양도대금 4,600원 - 처분 당시 시가 1,890원) × 위 계약상 양도주식 53만 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1, 2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 내지 이 사건 조합이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류연중